



종계 위생방역 대책 포인트

# 농장 근무자 방역위생관념 정립과 생활화



오 경 록 남덕에스피에프/이학박사

**지**난 11월 7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개최된 종계부화인대회에서 오경록 박사(남덕에스피에프)는 '종계장 위생방역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핵심내용은 농장 관리자의 위생방역 관념의 정립과 실천이 필수사항임을 강조였다. 본고는 이날 발표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양계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수칙은 종계육성농장 근무자의 방역위생관념의 정립과 생활화로 완벽한 방역체계를 확립하여 육성종계군의 질병예방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계군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건강하고 튼튼한 종계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 종계 수송

1) 수송전 3일부터 차량을 세척, 4급암모늄제 소독, 건조(1일) 후 1% formalin 소독 또는 formalin 훈증소독(2일) 후 가스배기 및 건조(3일)하여 운행한다.

2) 수송기사 및 탑승인원은 3일전부터 닭과의 접촉이 없어야 하며 수송업무 전에 목욕한 후 모든 옷과 신발은 바꾸어 착용후 곧바로 수송업무에 들어간다.

3) 초생추를 인수후 다른 장소(농장관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육성농장에 도착하여 초생추를 인도한다.

4) 수송기사 및 탑승자는 농장의 청정지역에서 내려서는 안된다.



## 2. 농장출입

### 1) 농장 근무자

- ① 출근시 농장입구에 비치된 소독기(전기분무기)를 이용하여 소정의 소독절차를 거친다.
- ② 탈의실을 거쳐 샤워실에서 샤워후 갱의실에서 관리자 근무복(위생복)을 착용한 후 작업에 임한다. 단 농장내 거주하는 여자관리자는 샤워시 머리감는 것은 생략한 대신 모자(캡)를 쓴다. 그러나 농장외부에서 출근하는 여자관리자는 샤워시 머리도 감어야 한다. 또한 농장내 거주자이라도 외부출타후 출입시에는 샤워시 머리를 감어야 한다.
- ③ 계사내로 들어갈 때는 비치된 발판소독조에 신발을 소독한 후 고무신으로 갈아신어야 하며 고무신은 계사내부에서만 착용한다.
- ④ 농장내 사택거주자의 자녀들은 계사내, 계사부근의 배회를 금하도록 부모에게 주의를 환기시킨다.
- ⑤ 농장근무자는 타농장 방문을 금하며 농장 사정에 의하여 타농장을 방문한 후에는 착용했던 의복, 신발을 교체하도록 하고 당일에는 계사에 출입을 금한다.

### 2) 외부출입자

농장근무자 이외는 모두 외부출입자(회사임직원 포함)가 방

문한 것으로 본다.

- ① 모든 외부의 사람, 차량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하되 부득이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장장의 허가를 받고 소정의 소독절차를 거친 후에만 출입이 허용된다.
- ② 72시간 내에 도계장 및 타농장에 방문한 적이 있는 방문객은 출입을 할 수 없다.
- ③ 출입이 허가된 사람은 위생복과 위생화를 착용하고 충분히 소독해야 하며 일단 이것을 착용한 상태로는 농장 외부로 나가는 것을 엄금한다.
- ④ 방문객은 무조건 농장내에서는 농장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농장장은 필요시 방문

표1. 출입통제 관리수칙

구분	출입금지(적)	출입통제(황)	출입가능(청)	
외부인 및 차량	대상	• 24시간 내 외부농장 방문인 및 차량 • 양계 관련인으로 농장 방문 미확인 및 차량	72시간 내 외부농장 방문인 및 차량	양계와 관계없는 인원
	출입범위	• 농장접근 금지 원칙 • 불가피하게 농장 방문 시 외부에서 목욕후 방문하고 농장 오염 지구까지만 출입	• 농장내 오염지구까지 출입가능 • 농장내 청정지구는 출입 불가원칙 • 불가피하게 청정 지구출입시 샤워(머리포함), 위생복 착용 후 가능	• 농장 위생관리 수칙에 따라 농장출입 • 농장내 청정지구 출입 시는 샤워(머리포함), 위생복 착용후 가능
해당				사료, 계분, 도태, 접종, 청소
내부인 및 차량 대상	대상	24시간내 외부 농장 방문 임직원 및 차량	내부 타 농장 방문 후 24시간내 방문 임직원 및 차량	• 농장내 거주 관리사원 • 72시간내에 농장 방문 없는 임직원 및 차량
	출입범위	• 농장 외 거주자는 접근금지 원칙 • 농장 내 거주자는 외부 또는 집에서 목욕후 의복, 신발교체 후 농장 오염지구까지만 출입	농장내 청정지구 출입시는 샤워(머리포함) 위생복 착용후 가능	농장 위생관리수칙에 따라 농장 출입
해당				초생추, 종란, 영입, 시설, GP



- 객의 출입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시설, 공사관계로 출입하는 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독출입하며 위생복과 위생화의 착용은 이전 작업장, 방문지 등을 파악하여 상황에 따라 농장장이 선택적 지시한다.
  - ⑥ 특별히 오염위험 추정자(계분처리자, 닭상인, 약품판매원, 사료회사원, 부화장 근무사원, 외부농장 방문객 등)는 농장에 접근을 금한다.
  - ⑦ 농장장은 모든 외부인이 농장을 출입할 경우는 일정한 안내를 하고 출입자 관리 대장에 기입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 ⑧ 농장내 거주자의 친인척 및 면회자 등은 농장내 사택 및 외부지역만 출입이 허용된다.

### 3. 육성농장 관리

- 1) 농장 위생관리수칙을 사무실에 부착하여 항상 주지할 수 있도록 한다.
- 2) 육성농장은 입추 1일전까지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입추준비용품을 다른 농장에서 이동하거나 빌려올 수가 없다.
- 3) 입추 일주일전부터 출입의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 4) 출입통제라인을 정하여 출입허가 정·부 책임자를 정하고 방문 1주전에 방문계획을 농장에 통보한다.(회사임직원의 방문도 동일)
- 5) 농장인원의 출타도 통제라인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6) 집중이나 선발 등의 작업시 가능한 자체 농장인원으로 해결하고 지원이 필요할 때는 24시간전에 타계군에 접촉한 사실이 없고 농장도착

전에 목욕하고 복장, 신발을 교체후 오도록 한다.

- 7) 약추 및 폐사계는 농장내에 매몰하고 선발도태계는 통제라인의 감독하에 청정라인 밖에서 자체세척소독된 차량에 인계되어야 한다.
  - 8) 크기가 작은 물건의 농장내 반입은 통과상자(Pass Box)를 통하여 일정한 소독(자외선, 1% formalin)를 한후 사용한다.
- 특히 타농장에서 사용한 물건의 반입은 철저한 세척소독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서류, 송장, 인수증, 우편물, 포장된 식품 등의 반입은 상자를 그대로 통과한다.

※ 자외선 : 하루저녁시간 여유시,

1% formalin액 : 불침투성물체

9) 외부인의 출입시 이용한 내빈용 위생모, 위생복과 신발은 2가지 색깔로 하여 매주 1회 이상 세탁해서 사용한다.

10) 정해진 백신접종프로그램에 따른 정해진 백신만 사용하여야 한다.

11) 계사는 설치류나 야생조류의 침입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 4. 물자반입

1) 농장내 반입되는 물자는 물자의 특성에 맞게 분무기, 연막소독기 등을 이용하여 농장입구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반입하고 물자반입기록부를 비치한다.

2) 타농장에서 사용되었거나 이동되어온 기구나 물자는 반입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 반입되는 경우는 우선 그 농장에서 반출시 소독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농장입구에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한다.



3) 사료의 반입시는 차량을 농장입구에서 분무 또는 연막소독하고 운전기사가 하차할 예정이면 운전기사도 소독절차를 거치고 출입하되 사료빈에 입고시에 사료입자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

### 5. 차량관리

1) 모든 차량은 농장내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하며 출입이 허가된 차량은 농장입구에 비치된 소독기 또는 분무기를 이용하여 소독절차를 거친 후에만 출입하되 사무실에 직원이 없더라도 본인이 직접 소독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통하여 알려준다.

2) 사료차량은 가능한 당일 타농장 수송전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3) 가스차량은 가스통만 내려놓고 가능한 농장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숙소 보일러용 유류차량은 정해진 부분만 통행하도록 한다.

4) 차량 소독시는 운전기사, 탑승자도 외부인 이므로 철저한 소독절차를 거친 후에만 농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5) 특별히 오염위험차량(계분차, 노계출하차, 닭이동차 등)은 항상 질병을 전파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소독업무를 더욱 철저히 실시한다.

### 6. 계군관리

1) 도폐사계는 입구에 배치한 도폐계 보관함에 넣은 후 기록하고 일과종료시 일괄 수거하여 정해진 장소에 매몰시키며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보고한다.

2) 계사출입문은 항상 잘 닫혀있어야 한다.

3) 농장장은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계사를 야간 점검하여 닭의 이상유무,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다.

4) 계사관리자는 사료급이시 주의깊게 계군을 관찰(음수량, 계분상태, 사료섭취시간 등)하여야 하며 사료의 이상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농장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5) 관리자는 항상 계군의 개체별 건강점검을 실시하되 이상개체, 계군의 변화 등이 있을 때는 즉시 농장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6) 쥐, 파리, 모기, 해충 등은 살충계획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구제하여야 한다.

7) 관리자는 접종, 채혈, 투약의 지시된 방법대로 지정된 날짜에 정확히 실시하고 기록해야 한다.

8) 농장입구 및 계사입구에 비치(설치)되어 있는 소독조를 출입시 마다 발판소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9) 계군이 성계농장으로 이동시에는 계군의 기록부(육추, 육성일지사본, 점등시간, 점등광도, 급이량, 약품, 접종, 검사현황)를 계군과 같이 인계하도록 한다.

### 7. 기 타

1) 농장내에서는 가금류(거위, 오리 등)나 애완조류, 개 및 다른 가축을 사육해서는 안된다.

2) 농장 사택에 거주하는 근무자는 닭고기 및 식란을 구입해서 집안에 반입해서는 안된다.

3) 농장장은 농장이 외부와 격리된 장소이므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항상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로 직원들에게 주지시킨다. **양계**